● 제330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(의안번호: 2662)

2025. 4. 28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2662

Ⅰ. 동의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 출 일 : 2025. 3. 31.

다. 회 부 일 : 2025. 4. 02.

2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서울시 서남권 시민들의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'서남권 거점 공공종합병원'으로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,

나.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자 진료와 병원 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중

다. 현 위·수탁 협약 기간이 만료('25.8.26.)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(사무의 위임 등)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관리운영의 위탁)

○ 추진 필요성

-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달성하고 동시에 병원 경영이라는 수익성을 부가적으로 추구하여야 함
-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성과 다년간의 공공의료 기관의 성공적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다. 위탁사무 내용

○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 진료와 일반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

○ 병원 시설물 운영·관리 및 기타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

○ 공공의료 확충사업 등 공공의료 사업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○ 시 설 명 : 서울특별시 서남병원

○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(신정동)

○ 시설규모 : 대지 11,189.40㎡, 건물 39,262.5㎡(지하4층, 지상8층)

○ 지원시설 : 서남권 거점 공공종합병원

○ 개원일자 : 2011년 5월

· **종별 : 종합병원**

· **층고** : 지하4층, 지상8층

- 외래부 : 진료실, 검사실, 재활의학센터 등
- 병동부 : 일반입원실, 중환자실, 수술실 등

· **의료정보통합시스템** : EMR, PACS, OCS

마. 민간위탁기간

○ 2025년 8월 27일 ~ 2030년 8월 26일(5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총 8,955,570천원('25년 예산)

○ 산출근거

(단위 : 본예산, 천원)

구 분	'24년도 예산	'25년도 예산
합 계	11,458,272	8,955,570
민간위탁금	**8,894,174**	**4,889,463**
공공의료 손실보전	8,132,418	3,635,000
건강돌봄 네트워크	425,756	454,463
셔틀버스 운영	300,000	300,000
전신용 전산화 단층엑스선 촬영장치(CT) 리스	-	500,000
노후설비부속교체	36,000	-
민간위탁사업비	**2,564,098**	**4,066,107**
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 강화	980,038	2,597,844
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	-	670,000
노후 환자동의서작성시스템 교체	-	274,230
노후 방화벽 교체 및 웹방화벽 도입	-	124,033
디스플레이 설치	-	400,000
식당 노후환경개선 공사	167,500	-
입원환자용 냉장고 교체	22,000	-
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	1,374,560	-
노후 개인정보필터링솔루션 교체	20,000	-

※ 세부 산출근거 : 붙임 1

아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(조직담당관-2384, '25.3.7.) : 적정(권고)

- (권고내용)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변경 시에도 진료인력 및 진료서비스 유지되도록 대책 마련
- (대 책) 수탁기관 적격자심의 시, 고용유지·승계 정도를 포함하여 평가
  · 고용유지·승계 정도 80% 이상 의무
  ·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 기준,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117조

> **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· 검사 · 검정 ·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·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> 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· 검사 · 검정 ·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>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> 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> 5. 시립병원, 보건 · 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○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

> **제10조(관리 · 운영의 위탁)**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 ·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> 1.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
> 2.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 · 약학 등에 관한 교육 · 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
>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·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> 4. 서울특별시 서남병원
> **제13조(준용)**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 · 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 이숙종 (☎ 2133-9248)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임영미)

1 동의(안)의 제출 경위

○ **'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' '재위탁 동의안'**은 기존 제4차 '재위탁'을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(서울의료원)과의 민간위탁 협약기간(5년) 만료 시기가 **'25년 8월 26일로 도래 예정**임에 따라,

※ 4차 재위탁: '20. 8. 27. ~ **'25. 8. 26. (5년)**

○ 이번 **제330회 임시회**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(이하 "민간위탁 조례"라 한다)」 **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**와 「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이하 "시립병원 조례"라 한다)」 **제13조 단서**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**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제출**되었음.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
제4조의3 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**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**을 하는 경우에는 **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** <개정 2021.3.25., 2021.12.30.>

「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제13조(준용)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**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**한다. 다만, **병원의 위탁기간**은 같은 조례 **제11조제2항**[1]에도 불구하고 **5년 이내**로 한다.

1) '병원사무'가 아닌 '**일반적인 사무**'에 관한 '**민간 위탁**' '**수탁 기간**'을 **3년 이내**로 명시하고 있던 (구)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**제11조제2항**이 2020. 7. 16. 동 조례 **개정**으로 현행 민간위탁 **조례 제11조제3항으로 '항 번호'가 변경**되었음. 이에 따라 **현행 「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단서도 '제11조제2항'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'제11조제3항'을 인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**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동 민간위탁은 **최초 위탁 시부터 '재위탁(공모)'방식만으로 추진되어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12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 p.25** 에 따라, **'재위탁'이 아닌 '1회에 한해' 동일 수탁기관과 '재계약(보고)'로 추진될 여지가 존재**하였음.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
제12조(재계약)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,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지침」(p.25) ('24.1.)
※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개정으로 모든 민간위탁 사무는 재계약 1회로 제한 ('24.4.5. 시행)

○ 그러나, **동 사무는 4년간의 시립병원 평가 평균 점수는 82.3점이나, 직전 연도인 2024년 시립병원 평가에서 72.4점이라는 다소 저조한 점수**를 받아, **'재계약'이 아닌 재위탁 공개모집으로 추진되었음.**

연도	2021	2022	2023	2024	평균
점수	90.7점	81.2점	84.9점	72.4점	82.3점

필요적 재위탁 공모 (재계약 배제) 사유 (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(p.58))

① **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**

※「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, **'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'**는 **'다른 법령이나 조례' 등에 따른 '별도의 평가'로 대체가 가능**함. 그리고 이에 따라 **'시립병원 민간위탁'의 경우는 '종합성과평가'**를 **「시립병원 조례」 제22조의 '시립병원 성과평가'로 대체**하고 있음.

- 다만, 이 경우 **(1) '최종평가점수'가 '민간위탁 총 5년간[2] 또는 총 4년간'의 '시립병원 평가의 평균 점수'**인지 아니면 **(2) '동의안 제출 바로 직전 연도 평가점수'인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, 명확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**. (예시) 과거 23년 보라매병원 및 백암정신병원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, 집행기관이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'대체 종합 성과평가'는 직전 연도인 2022년 시립병원 평가이었음. (출처: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정보 참조)

- 아울러, **'평가 체계 및 평가 방식'이 현저히 다른 '일반적인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'**와 **'시립병원 사무 성과평가'**를 **'가중치'나 '보정'없이 절대 평가 점수인 '75점'을 기준으로 '필요적 재계약 배제'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지 검토**가 필요함.

---

2) 현실적인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점 및 예산 편성 및 심의 의결 시점 등을 고려하면, 5년이 아닌 4년간 평균 점수로 판단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임.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10조(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)
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**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**하여야 하는 **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**로 한다. **다만,** 법령이나 **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.**
「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(평가)
① **시장은** 병원의 공공성, 경영효율성,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 **연1회 병원성과평가를 실시**하여 **공공의료의 성장에 기여토록 한다.**

2 민간위탁 추진경위 및 개요

○ 기존 민간위탁 추진 경위

구 분	위탁기간	수탁기관	선정방법	비고
최초위탁	3년 ('11.5.27.~'14.5.26.)	이화학당	**공개모집**	
	3개월('14.5.27.~'14.8.26.)	이화학당	협약연장	재위탁 유찰로 연장
2차 위탁	3년 ('14.8.27.~'17.8.26.)	이화학당	**공개모집**	2회 유찰 후 수의계약
3차 위탁	3년 ('17.8.27.~'20.8.26.)	서울의료원	**공개모집**	2회 유찰 후 수의계약
4차 위탁	5년 ('20.8.27.~'25.8.26.)	서울의료원	**공개모집**	2회 유찰 후 수의계약

○ 민간위탁 개요

- 사 무 명 :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- 위탁유형 : 시설형 (재위탁)
- 위탁기간 (예정) : 5년 ('25. 8. 27. ~ '30. 8. 26.)
- 소요예산 ('25년) : 8,955,570천원[3)]

연 도	예산과목	세부 내역	
2025년	**민간위탁금**	**○ 민간위탁금**	**= 4,889,463천원**
		- 공공의료 손실 보전	= 3,635,000천원
		- 건강돌봄 네트워크	= 454,463천원
		- 서남병원 셔틀버스 운영	= 300,000천원
		- 의료장비(CT) 리스	= 500,000천원
	민간위탁금 사업비	**○ 민간위탁금 사업비**	**= 4,066,107천원**
		-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강화	= 2,597,844천원
		- 지하주차장 환경 개선	= 670,000천원
		- 노후 환자동의서작성시스템 교체	= 274,230천원
		- 노후 방화벽 교체 및 웹방화벽 도입	= 124,033천원
		- 디스플레이 설치	= 400,000천원

3) '24년 대비 '25년 공공 손실보전은 4,497,418천원(약 44억원) 감액되었고, 향후 재난관리기금 활용하여 추가 지원 예정 (출처 : 2025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p.867)

○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**적정(권고)**

부서명	위탁사무명	유 형		수탁기관	위탁 기간	심의 결과
시민건강국 (공공의료과)	서울특별시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	시설형	재위탁	공모 예정 (現 서울의료원)	5년	적정 (권고)

- (권고) **재위탁**에 따른 **수탁기관 변경 시**에도 **진료인력 및 진료서비스 유지**되도록 **대책 마련**

3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필요성 검토

○ 서울특별시장이 민간에 재위탁(공모)하고자 하는 **"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"의 구체적인 사무 내용**은 다음과 같음.

○ 구체적인 위탁사무

-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**공공 진료**와 일반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
- 병원 시설물 운영·관리 및 기타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
- **공공의료** 확충사업 등 **공공의료사업**

○ 동 사무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, 의료법인 등에 **민간위탁 운영을 맡길 수 있는 "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운영 사무"**(시립병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)**로서, 특수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함.** (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제5호)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○ 따라서, **“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사무”**는 **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 및 보건 사무라는** 점에서서, 서울시 직영, 자치구 위임, 용역 또는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는것 보다는 **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의 의료 자원을 위탁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고 사료**됨.

○ 아울러, **“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”은**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(민간위탁근거)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마목(**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**)(자치사무 근거)에 따라,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**‘자치사무’**임

「지방자치법」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2. 주민의 복지증진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○ 그리고 **‘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’ 사무를 ‘민간’에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** 및 **「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존재함**에 따라, 동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한 **법적 타당성은 존재한다고 판단**됨.

「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제10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**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**할 수 있다. 1. 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.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·약학 등에 관한 교육·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.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**위탁·운영할 수 있는 병원**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. 서울특별시 서남병원

4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적정(권고) 검토

○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(안)을 제출하기전에 거쳐야하는 **필수적 사전 절차인 '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'**에서는 **동 사무에 대해 '적정(권고)' 의견**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음.

- **(권고의견)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변경 시에도 진료인력 및 진료서비스 유지되도록 대책 마련**

○ 따라서, 집행기관은 **향후 재위탁(공모) 추진 과정**에서 기존 수탁기관이 아닌 **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될 경우**, 「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·회계 및 인사·노무 운영 매뉴얼」(p.90) 및 「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(19. 12. 4.)」에 따라, **"특별한 사정"이 없는 한 기존의 수탁법인 노동자 80% 이상의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를 준수**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이와 동시에 **'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권고의견'** 에 따라 **'진료 인력 및 진료 서비스 질' 의 유지대책 마련**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

〈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·회계 및 인사·노무 운영 매뉴얼 p.90 〉

02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

2.1 고용승계

고용승계 의무	"특별한 사정"이 없는 한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 유지 및 승계(80% 이상) 의무 발생
특별한 사정의 예시	① '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('19.12.4., 관계부처 합동)에서 명시한 사유 포함 -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-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(예 : 민간대체인력뱅크, 일터혁신컨설팅지원 등 -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노동자(예 : 의사, 변호사, 변리사 등) ② '사무종료, 사무운영 방식의 전환 등'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 타 법령, 자치법규, 지침 등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

5 종합의견

○ **‘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’ ‘재위탁 동의안’은** 기존 수탁기관(서울의료원)과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(5년) 만료 시기가 **’25년 8월 26일로 도래 예정**임에 따라, 이번 **제330회 임시회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**되었음.

○ 다만, 동 민간위탁은 ‘재위탁’이 아닌 **‘1회’에 한해 동일 수탁기관과 ‘재계약(보고)’로 추진될 여지가 존재**하였으나, **2024년 시립병원 평가에서 72.4점이라는 다소 저조한 점수**를 받아 ‘재계약’이 아닌 ‘재위탁 공개모집’으로 추진되었음.

○ 동 ‘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사무’는 **‘고도의 의학적 전문성과 기술’이 필요한 사무**임에 따라 ‘민간 의료 영역’ 의 우수한 전문성을 활용해 추진이 필요한 사무라 판단됨. 아울러, 동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**법적 근거 역시 「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 에 명시적으로 존재**한다고 사료됨.

문 의 처
(02-2180-8145)

붙임 1

- 산출근거

「민간위탁금」

▶ 공공의료 손실보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공공의료손실보전	8,507,000	7,927,000	8,269,296	8,132,418	3,635,000

▶ 건강돌봄 네트워크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산출 내역
계	454,463	
인건비	318,083	· 간호사(4명), 사회복지사(2명)
복리후생비	43,000	
의료사회사업비	93,380	· 치료지원 사업비 · 퇴원연계 대상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사업비 · 건강 취약계층 방문진료·방문서비스 운영비 · 방문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· 만성질환(고혈압, 당뇨) 대상자 자조모임 운영비 · 지역사회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(건강강좌) 운영비 · 건강포스터 및 교육자료 제작

▶ 셔틀버스 운영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산출 내역
외주용역비	300,000	· 서남병원 셔틀버스 운영 4대

▶ 전신용 전산화 단층엑스선 촬영장치(CT) 리스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산출 내역
리스료	500,000	· CT 장비 리스 1식

「민간위탁사업비」

▶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 강화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예산액	산출 내역
계		2,597,844	
의료장비	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	2,297,844	· 응급실 CT 외 6점
	서남병원 위탁 운영 관련	300,000	

▶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산출 내역
건물	670,000	· 바닥 및 벽체 균열 보수 등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

▶ 노후 환자동의서작성시스템 교체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산출 내역
계	274,230	
기타무형자산	228,800	· 환자동의서작성솔루션(SW)
공기구 비품	45,430	· 태블릿 모니터, 모바일 태블릿, 서버 스토리지 등

▶ 노후 방화벽 교체 및 웹방화벽 도입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산출 내역
공기구 비품	124,430	· 방화벽 2식, 웹방화벽 1식

▶ 디스플레이 설치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산출 내역
공기구 비품	400,000	· 디스플레이, 영상송출장치, 디지털믹서 등 개선